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주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, 예방접종피해보상 관련 대리인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국민의 편의 증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감염병”을 “검체 등 감염병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(이하 “보상대상자”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보상대상자의 위임)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려는 보상대상자는 보상의 신청 등을 직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운영”을 “구축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유·처리 및 자료의 입력·제출 요청을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의3제2항과 같다.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<u>감염병</u> 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(생략)	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① 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김체 등 감염병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·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0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) ① ----- ----- -- <u>사람(이하 “보상대상자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30조의2(보상대상자의 위임)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려는 보상대상자는 보상의 신청 등을 직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	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-----

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<u>운영</u> 3. · 4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9. (생략) ⑤ ·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구축·운영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<u>구축·운영(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유·처리 및 자료의 입력·제출 요청을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의3제2항과 같다.)</u> 3. ~ 10. (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0